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1.

발의자 : 추경호 · 김기현 · 권성동

서지영 · 이현승 · 김성원

김정재 · 최은석 · 박수민

박성민 · 김상훈 · 이인선

박대출 · 권영세 · 윤영석

배준영 · 김승수 · 김위상

의원(18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업 간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·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,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등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,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 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대  
· 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  
임(안 제7조의4 및 제8조의3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<p>의3, 제126조의2,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)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]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. 다만,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.</p>	
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의3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법인이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또는 「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</p>	<p>제8조의3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 ① <u>2</u> <u>028년 12월 31일</u></p>





정한다.

⑤ ~ ⑧ (생략)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